

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5일
신고인	대표자	영업소명		
	등록번호			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	

변경 사유

분실 사유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품질인증기관의 장

귀하

첨부서류	1.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.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6조제1항 또는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제품명, 원재료명,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3.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1부(원재료명,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4.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(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5. 그 밖에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1.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지정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2.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,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처리 절차

